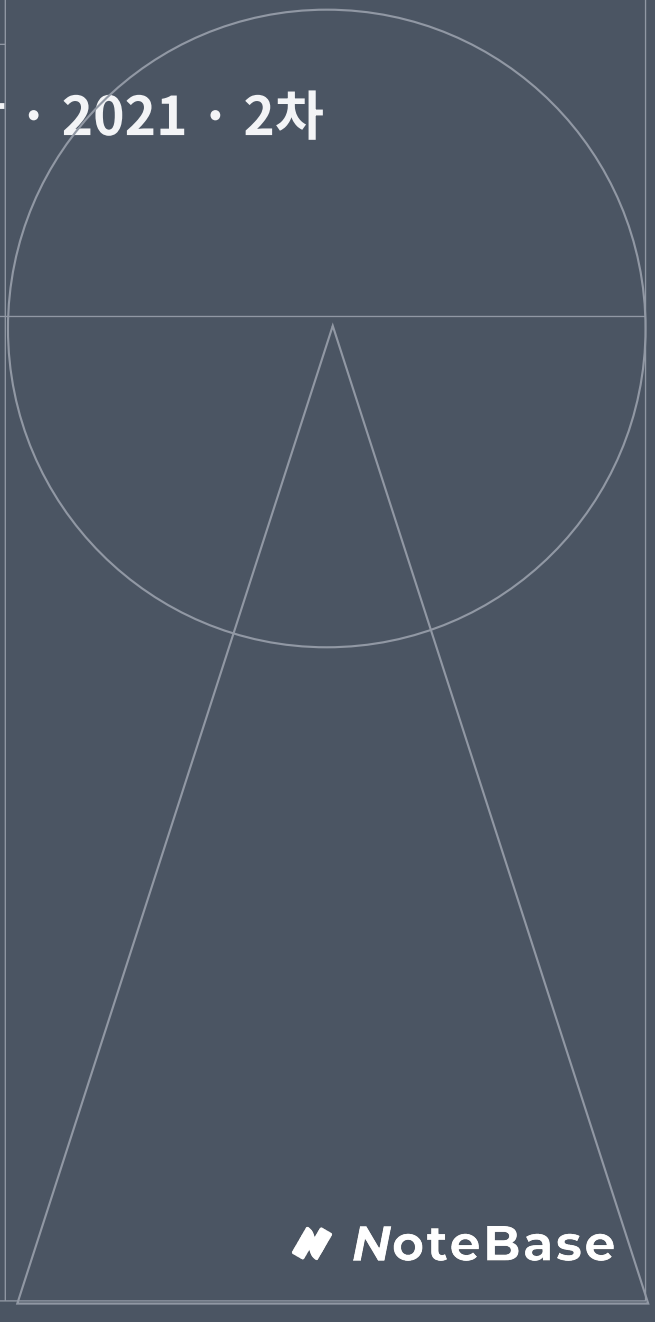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1 · 2차

문 1. 나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②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③ 선주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④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나용선(裸傭船, 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이 다른 용선 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선박의 점유·운항·비용 부담 주체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裸船, 승무원과 장비를 제외한 배 자체)만을 일정 기간 빌려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운항하는 계약이다.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자신이 고용·지휘하고, 연료비·선원 급료·보험료·항비·하역비 등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나용선은 선박이라는 물건 자체를 일정 기간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lease)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선주가 선장·선원을 고용·지휘하고 선박 운항에 관한 책임과 비용을 그대로 지는 정기용선(time charter)이나, 선주가 직접 운송행위의 주체가 되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개품운송)과 대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 X. 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한다. 선주가 선장을 임명·지휘하는 것은 정기용선의 특징이다.
②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 X. 이는 항해용선(개품운송)의 설명이다. 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박 자체를 빌려 스스로 운송행위의 주체가 되어 선박을 운항한다.
③ 선주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 X. 나용선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한다. 선주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의 특징이다.
④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O. 나용선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선박을 빌리고 그 대가로 임차료(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선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나용선·정기용선·항해용선을 헷갈리면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선장·선원을 고용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세 가지 용선 형태에서 '누가 배를 직접 운항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선주가 선장을 임명·지휘한다' 또는 '선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 쪽 설명이므로 나용선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본다. 반대로 '용선자가 직접 운항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임대차와 유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나용선의 정답 후보로 본다.

암기 포인트

나용선=선박(빈 배)만 임대 → 용선자가 선장·선원 고용, 비용 전부 부담, 직접 운항 → 임대차 계약과 유사.
정기용선=선주가 선장·선원 고용·지휘, 용선자는 선복만 이용. 항해용선=선주가 운송행위의 주체.

NoteBase

문 2.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fore’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일자가 포함되나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②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명시된 일자 이후 5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명시된 일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한다.

④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prompt’ 또는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그것을 인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UCP 600 제3조는 신용장에서 선적시기·기간을 표시할 때 쓰이는 관용 문언들을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는지를 묻는다. 'to·until·till·from·before·after'가 명시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on or about'의 기간 범위와 시작·종료일 포함 여부, '전반·후반'의 날짜 구간, 그리고 'prompt·as soon as possible' 같은 모호한 표현에 대한 은행의 처리 방식을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계산에 언급된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이후 5일까지 총 11일의 기간을 뜻하며, 그 시작일과 종료일도 모두 포함한다.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은 1일부터 15일까지, '후반(second half)'은 16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이며 모두 해당 일자를 포함한다. 한편 '초순(beginning)'은 1일부터 10일, '중순(middle)'은 11일부터 20일, '하순(end)'은 21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석되는데, 이 문항의 선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용장에 구체적 일자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쓴 경우, 은행은 그러한 문언을 무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to, until, till, from'이 명시일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before'도 여기에 묶어 포함되는 용어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UCP 600 제3조에서는 'before'와 'after'가 함께 묶여 명시일을 '제외'하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efore'를 포함 용어 쪽에 넣은 이 선지는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X: 'on or about'의 기간 범위(명시일 이전 5일부터 이후 5일까지)는 맞게 서술했지만,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UCP 600 제3조는 이 기간의 처음과 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한다.
③ O: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 half)'은 각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뜻하며 두 구간 모두 그 안의 모든 일자(시작일·종료일 포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신용장에 구체적 일자·기간을 정하지 않고 'prompt'나 'as soon as possible' 같은 모호한 문언을 쓴 경우, 은행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언을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두 군데에 있다. 첫째, 'before'와 'after'를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것처럼 갈라놓아 'before'를 포함 용어 그룹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①)이다. 'before'와 'after'는 항상 짝을 이루어 명시일을 제외하는 용어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on or about'처럼 기간의 폭은 맞게 제시하면서 시작일·종료일의 포함 여부만 뒤집어 놓는 방식(②)이다. 기간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에서 '포함'과 '제외'가 뒤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표현마다 포함/제외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적시기 표시 문언이 나오면 먼저 '포함 그룹(to, until, till, from, between, on or about, first/second half, beginning/middle/end)'과 '제외 그룹(before, after)'으로 나누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용어인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on or about'처럼 기간 폭이 주어진 선지는 시작일·종료일의 포함 여부가 뒤집혀 있지 않은지 따로 점검하고, 'prompt' 계열 표현이 나오면 은행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점을 떠올려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포함: to·until·till·from·between, on or about(전후 5일, 시작·종료일 포함), 전반(1~15일)·후반(16일~말일), 초순(1~10일)·중순(11~20일)·하순(21일~말일). 제외: before·after. 무시: prompt·immediately·as soon as possible(은행이 이러한 표현은 무시하고 심사한다).

NoteBase

문 3.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②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③ Incoterms®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④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Incoterms® 2020 규칙이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 그리고 DAP·FCA·DPU·DDP 등 개별 정형거래조건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Incoterms의 적용 범위(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부담)와 적용 범위 밖의 사항(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물품의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의 효과,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Incoterms®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 위험의 이전 시점, 비용 부담의 분배만을 규정한다. 반면 매매계약 자체의 존재나 유효성, 물품의 품질,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관세 등 수출입 통관에 관한 사항은 Incoterms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준거법(예: CISG, 각국 국내법)에 맡겨진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며, FCA(Free Carrier)는 해상운송을 이용하면서 본선적재표시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매도인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를 2020년 개정에서 신설하였다. 또한 FCA, DAP,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Delivered Duty Paid)는 모두 운송방식에 제한이 없는 조건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DAP조건의 정의로 옳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된다.
② O —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이 이용되고 본선적재표시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한 선택적 절차는 Incoterms® 2020에서 실제로 신설된 내용이다.
③ X — 틀린 표현: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올바른 표현: Incoterms®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나 관세 부과와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매매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나 각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④ O — FCA, DAP, DPU, DDP는 운송방식에 제한이 없는(any mode of transport) 조건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오답 포인트

Incoterms의 적용 범위를 넓게 오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Incoterms가 무역실무 전반을 다룬다고 생각해 매매계약의 성립, 소유권 이전, 관세 부과까지 규율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물품 인도·위험 이전·비용 분담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만 국한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 선지에 등장하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Incoterms가 ~을 다루고 있다" 또는 "~에 대해 규정한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 대상이 의무·위험·비용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매매계약의 존재, 물품의 소유권, 관세·수출입 통관, 대금지급,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등이 언급되면 이는 Incoterms의 규율 범위 밖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기 포인트

Incoterms® 2020의 3대 규율 범위 = 의무·위험·비용(인도의무·위험이전·비용부담). Incoterms가 다루지 않는 것 = 매매계약의 존재·유효성, 물품의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의 효과, 관세 부과 및 수출입 통관 절차.
FCA·DAP·DPU·DDP = 운송방식 제한 없는 조건(운송계약 체결 또는 자가운송 허용). FCA 2020 신설 내용 = 해상운송 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 절차.

NoteBase

문 4. 다음은 해외시장진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용어를 A~F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는)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한 파트너는 시설을 소유하고 다른 한 파트너는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의 방식을 말한다.
○ (나)은(는)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며 제조업체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 (다)은(는) 발전소, 생산공장,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고 가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에 더하여, 해외의 발주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A.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B. 라이센싱(licensing)
C.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ODM)
D.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E. 턴키 플러스(turnkey plus)
F.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① (가): A, (나): C, (다): E
② (가): B, (나): D, (다): F
③ (가): A, (나): C, (다): F
④ (가): B, (나): D, (다): 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해외시장 진출방식(계약형 진출방식) 각각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용어와 매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경영관리계약, ODM과 OEM의 차이, 턴키계약과 턴키 플러스의 차이가 핵심 포인트다.

NoteBase

핵심 개념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은 노하우·경영기술을 가진 기업이 자금·설비를 가진 기업과 계약을 맺어, 설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한쪽은 시설을 소유하고 다른 한쪽은 경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은 제조업체가 설계·개발 능력까지 갖추어 제품을 직접 개발 및 생산해 주문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이며, 주문업체는 유통·판매만 담당한다. 반면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은 주문업체가 설계·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체는 그 사양대로 생산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ODM과 구분된다.
턴키계약(turnkey contract)은 발전소·공장·설비 등을 건설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방식이고, 턴키 플러스(turnkey plus)는 여기에 더해 경영관리, 근로자 훈련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가)는 노하우 보유 기업과 자금·설비 보유 기업이 계약을 맺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므로 경영관리계약(A)에 해당한다.
(나)는 제조업체가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개발·생산해 주문업체에 납품하며 주문업체는 유통·판매만 담당하므로, 설계·개발까지 제조업체가 수행하는 ODM(C)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양대로 생산만 위탁하는 OEM(D)과는 설계·개발 주체가 다르므로 구분된다.
(다)는 건설·인도에 더하여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 같은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므로, 기본 인도로 끝나는 턴키계약(F)이 아니라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턴키 플러스(E)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다)는 각각 A, C, E이므로 ① A-C-E가 정답이다.
② B-D-F: (가)를 라이센싱(B)으로, (나)를 OEM(D)으로, (다)를 턴키계약(F)으로 본 조합이나, 지문의 소유·경영 분리 설명은 라이센싱이 아닌 경영관리계약에 해당하고, (나)는 설계·개발까지 제조업체가 수행하므로 OEM이 아닌 ODM이며, (다)는 부가서비스가 있으므로 턴키계약이 아닌 턴키 플러스다.
③ A-C-F: (가)와 (나)는 맞지만 (다)를 턴키계약(F)으로 본 것이 틀렸다. 지문에 경영관리·근로자 훈련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턴키 플러스(E)가 되어야 한다.
④ B-D-E: (다)는 맞지만 (가)를 라이센싱(B), (나)를 OEM(D)으로 본 것이 틀렸다. (가)는 소유·경영 분리 방식이므로 경영관리계약(A), (나)는 제조업체가 설계·개발까지 담당하므로 ODM(C)이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라이센싱은 기술·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대가를 받고 허여하는 방식일 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한쪽이 시설을 소유하고 다른 쪽이 경영을 맡는 구조가 아니므로 경영관리계약과 혼동하면 안 된다. OEM과 ODM은 둘 다 위탁생산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데, 설계·개발의 주체가 제조업체인지(ODM) 주문업체인지(OEM)로 구분해야 한다. 턴키계약과 턴키 플러스는 건설·인도까지만인지, 이후 경영관리·훈련 등 운영 지원까지 포함하는지로 구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경영관리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설계 및 개발'까지 제조업체가 수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ODM, 주문업체가 사양만 제공하고 제조만 위탁한다는 표현이면 OEM으로 구분한다. 건설·설비 인도 이후에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라는 표현이 있으면 턴키 플러스, 단순 인도로 끝나면 턴키계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영관리계약=소유와 경영의 분리, ODM=설계·개발+생산(제조업체 주도), OEM=사양대로 생산만(주문업체 주도), 턴키계약=건설·인도로 종료, 턴키 플러스=턴키계약+경영관리·훈련 등 부가서비스로 정리해 기억한다.

NoteBase

문 5. 무역거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가공무역은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판매 잔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③ 위탁판매수출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 무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수출을 말한다.

④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수무역거래방식인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중계무역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제시하고 정확한 정의를 골라내게 하는 문제이다. 각 방식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 여부, 수출입 통관 절차, 대금 영수 방식, 취득하는 이익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위탁가공무역=원자재(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외국의 수탁자에게 수출하여 가공시킨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위탁판매수출=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외 현지에서 판매를 위탁하고, 실제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하며 팔리지 않은 잔량은 반송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도수출=국내에서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국외의 다른 장소(주로 해외 건설·플랜트 현장이나 위탁가공 현지)에서 그대로 인도되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방식이다. 중계무역=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의 차액인 가득액을 취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의 내용(소유권 미이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 영수, 잔량은 반송 또는 제3자 판매)은 위탁가공무역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출의 정의이다.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무상 수출해 가공시킨 뒤 가공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② X: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도되는 방식이며, 대금도 국내에서 영수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설명(국내 수출통관 후 인도, 대금은 해외에서 영수)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X: 지문의 내용(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자재를 무상 수출하여 가공 후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은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이다. 위탁판매수출은 완제품을 무환 수출해 현지에서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④ O: 중계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의 차액인 가득액을 취득하는 거래방식이라는 설명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① ③은 위탁가공무역과 위탁판매수출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된 함정으로, '원자재를 무상 수출해 가공' 키워드는 위탁가공무역, '완제품을 무환 수출해 현지 판매·잔량 반송' 키워드는 위탁판매수출로 짝을 지어 구분해야 한다. ②는 외국인도수출의 통관 절차와 대금 영수 장소를 반대로 서술한 함정이므로, '국내 통관 여부'와 '대금 영수 장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수무역거래방식 문제는 먼저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원자재를 보내는지 완제품을 보내는지, 통관을 거치는지, 대금을 어디서 받는지 네 가지 기준으로 선지를 분해한 뒤 정의를 대조한다. 정의가 서로 자리를 바꿔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키워드만 보고 넘기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위탁가공무역=원자재 무상 수출 후 가공물 재수입·제3국판매. 위탁판매수출=완제품 무환 수출 후 판매분만 대금 영수·잔량 반송. 외국인도수출=국내 미통관·물품 해외 인도·대금은 국내 영수. 중계무역=수입품 원상태 그대로 제3국 수출·가득액(차액) 취득.

NoteBase

문 6. 중재(arbi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1번

쟁점

중재법상 중재제도의 기본 원리와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특히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용어 풀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판정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을 때 법원에 그 판정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인·집행 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이다.
중재합의: 계약상 또는 계약과 별개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핵심 구분

취소의 소 제기 가능 → 승인·집행 결정 확정 '전'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의 소 제기 불가 →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불가능하다.
확정된 승인·집행 결정에 다시 취소의 소를 허용하면 이미 확정된 판단을 뒤집는 모순이 생기므로 중재법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승인·집행 결정 확정으로 그 판정의 효력이 최종 확정되므로, 이후 취소의 소로 다시 다투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 → '제기할 수 없다'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② O: 중재의 대표적 장점으로, 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어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재판부를 선택할 수 없는 소송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③ O: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별도 중재계약) 형식으로 하거나 주된 계약 안에 중재조항을 두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방식과 무관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성은 중재합의의 형식 요건이다.
④ O: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다른 문서를 인용하고 있으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용이 중재조항을 해당 계약의 일부로 삼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단서까지 정확한 서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라는 시점 표현에 주목하지 못하고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를 일반적인 취소의 소 허용 원칙으로 착각하기 쉽다. 취소의 소 자체는 인정되지만, 승인·집행 결정 확정 후에는 예외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확정된 후 → 제기 불가'를 놓치면 정답을 못 고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재제도 문항은 선지에 등장하는 '시점'과 '가능/불가능' 표현을 먼저 대조한다.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라는 단서가 붙은 취소의 소는 불가능이 원칙임을 떠올려 그 선지의 진위를 판별한다. 나머지 선지는 중재의 장점(전문가 선정)과 중재합의의 형식(서면·인용 문서)이라는 기본 논점이므로 원칙에 부합하면 옳은 것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중재판정 취소의 소: 승인·집행 결정 확정 '후'에는 제기 불가(그 전까지만 가능). 중재합의는 서면 요건, 독립 합의든 계약 내 중재조항이든 가능. 중재조항 포함 문서 인용 시 중재합의 인정(단, 그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삼은 경우 한정). 중재의 장점: 전문가 중재인 선정 가능.

NoteBase

문 7. 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정답 3번

쟁점

WTO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상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형태와 존속기간, 그리고 조사결과 피해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의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가 쟁점이다.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이라는 단일 형태로만 취할 수 있고, 사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고 판정되면 인상한 관세는 신속히 환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본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취하는 조치이다.

핵심 구분

잠정조치의 형태=관세인상만 가능(수량제한·양허 철회 등은 불가) / 확정(본)조치의 형태=관세인상, 수량제한 등 폭넓게 가능. 잠정조치 최장기간=200일. 잠정조치 후 피해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인상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다른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세이프가드 발동의 실체적 요건으로 조사당국은 (a) 수입의 급증, (b)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c)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의 조사·판정 요건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② O —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원산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무차별 적용 원칙).
③ X —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할 수 있고, 사후 조사에서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인상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한다'가 옳다. 200일 초과 금지는 맞으나, 잠정조치의 형태가 관세인상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해가 없으면 관세를 환급한다는 점을 왜곡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O —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고 국내산업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비례성·필요최소한의 원칙).

오답 포인트

③에서 '200일'과 '최종판정' 같은 익숙한 표현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 문장 전체를 맞다고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함정은 문장 뒤쪽의 '관세인상·수량제한·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선택'이라는 부분이다. 잠정조치는 오직 관세인상만 가능하며, 피해가 없다고 판정되면 조치를 새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걷은 관세를 '환급'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잠정 세이프가드가 나오면 세 가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한다. 첫째 기간은 200일 이내인가, 둘째 형태는 관세인상 하나뿐인가, 셋째 사후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되면 관세를 환급하는가. 이 중 형태를 '수량제한' 등으로 넓히거나 환급 대신 다른 조치를 선택한다고 서술하면 그 선지가 틀린 것이다.

암기 포인트

잠정 세이프가드 = '관세인상 · 200일 · 환급'으로 외워 둔다. 잠정조치는 관세인상만, 최장 200일, 피해 없으면 관세 신속 환급이다. 반면 확정조치라야 수량제한·양허 철회까지 쓸 수 있고, 세이프가드는 출처 불문 무차별 적용에 필요최소한의 범위라는 두 원칙을 함께 기억한다.

NoteBase

문 8.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② 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④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손해 항목(특별비용, 구조료, 손해방지비용, 공동해손분담금)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각 비용이 누구에 의해 지출·청구되며 어떤 성격의 손해로 분류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구조료(salvage charges)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한 경우 법(해상법의 구조료 법리)에 의해 구조한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은 공동해손행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그 공동해손행위로 인해 혜택을 받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분담시키는 청구를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설명은 맞으나, 그 지출 주체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다. 특별비용은 피보험자 측이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보험자의 대리인이 지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O → 구조료는 별도의 구조계약 없이 제3자가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였을 때, 법리에 따라 구조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며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③ O →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④ O →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상한 후, 그 공동해손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특별비용의 지출 주체를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특별비용은 어디까지나 피보험자 자신이나 그 대리인이 재산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 구조료나 공동해손분담금처럼 제3자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상손해 관련 비용 문제에서는 먼저 '누가 지출하는가'와 '누구에게 청구하는가'를 표로 정리하듯 구분해서 대입해 본다.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또는 그 대리인)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구조료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뒤 혜택을 본 자에게 구상하는 성격이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하면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 = 피보험자(대리인 포함) 본인이 지출, 구조료 = 제3자에게 지급, 공동해손분담금 = 보험자가 대위 보상 후 수혜자에게 구상 청구.

NoteBase

문 9.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서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서류는 최소한 1통의 원본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②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고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③ 서류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서류 발행인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은행이 그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④ 철도 및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정답 2번

쟁점

UCP 600(신용장통일규칙)의 서류 관련 조항 중 어느 설명이 규칙과 다른지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관한 제18조로,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나머지 선지는 원본 서류에 관한 제17조와 운송서류에 관한 제14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모두 옳다.

용어 풀이

원본(Original): 서류 발행인이 직접 작성·서명하거나 원본으로 보이는 방식(수기·타자·천공·스탬프 등)으로 표시된 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하는 대금 청구서 성격의 기본 서류.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보통 수출자이다.

핵심 구분

상업송장은 '동일 통화로 작성'은 필요조건이지만 '서명'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UCP 600 제18조에 따르면 상업송장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need not be signed). 반면 원본 제시(제17조), 원본 인정 기준(제17조), 철도·내수로 운송서류의 원본 간주(제14조)는 모두 규칙 원문 그대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17조에 따라 신용장에 규정된 각 서류는 최소한 1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규칙 원문과 일치한다.
② X: 상업송장이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옳으나(제18조),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UCP 600상 상업송장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서명될 필요가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제17조에 따라 서류에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발행인에 의해 수기·타자·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된다. 규칙 원문과 일치한다.
④ O: 제14조에 따라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규칙 원문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앞부분('동일 통화로 작성')이 옳기 때문에 뒷부분('서명 필요')까지 옳다고 지나치기 쉽다. 한 선지 안에서 앞은 맞고 뒤는 틀린 복합 진술이므로 문장 전체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서명 요건을 다른 서류(환어음·보험서류 등 서명이 필요한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므로 규칙과 다른 한 개를 찾는다. UCP 600 서류 문제에서 상업송장이 나오면 '동일 통화=필요, 서명=불필요'를 먼저 대입한다. 원본 관련 선지는 제17조(최소 1통 원본, 수기·타자·천공·스탬프도 원본), 운송서류 선지는 제14조(철도·내수로는 원본 표시 무관하게 원본)를 대입하면 나머지 셋은 옳고 서명 요건이 붙은 상업송장 선지가 틀린 것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상업송장은 동일 통화로 작성되나 서명은 필요 없다(UCP 600 제18조). 각 서류는 최소 1통의 원본 제시(제17조). 수기·타자·천공·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면 원본으로 수리(제17조). 철도·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원본으로 수리(제14조).

NoteBase

문 10.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입기에는 제품이 가지는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② 성장기에는 제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생산시설의 고정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고 대량생산방법이 도입된다.

③ 성숙기 단계에서 생산안정화가 진행되면 시장진입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여 국내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④ 쇠퇴기에는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후진국으로 넘어가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 후진국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버논(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에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 각 단계별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성숙기에 나타나는 경쟁 구조 변화(시장진입 기업 수 증가, 가격경쟁 심화, 표준화)를 성장기·도입기의 특징과 혼동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신제품이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를 거치면서 생산기술의 표준화 정도와 국가 간 비교우위가 함께 이동한다고 본다. 도입기에는 혁신국(주로 선진국)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성장기에는 수요 급증과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며, 성숙기에는 기술이 표준화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기업 수가 늘어나며, 쇠퇴기에는 생산의 비교우위가 인건비가 낮은 후진국으로 이전된다.

선지별 해설

① 도입기에는 신제품이 독점적 성격을 가져 대체재가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② 성장기에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이 생산설비를 확충·고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대량생산방식이 도입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성숙기에는 제품과 생산공정이 표준화되면서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규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된다. 그 결과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시장에서의 사업기회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시장진입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여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시기"라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시장진입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에서의 사업기회는 줄어드는 시기"이다.
④ 쇠퇴기에는 제품 생산기술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인건비가 낮은 후진국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생산기지 자체가 후진국으로 이전된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성장기와 성숙기의 기업 수 변화 방향을 반대로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성장기에는 아직 소수 기업이 생산시설을 고정화·확충하는 단계이고, 성숙기에 들어서야 표준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기업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성숙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준화·경쟁심화·기업 수 증가·가격경쟁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고, '기업 수 감소'나 '사업기회 확대'처럼 성장기적 서술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머지 도입기·성장기·쇠퇴기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자주 제시되므로 소거법으로 접근해도 된다.

암기 포인트

도입기=독점·가격탄력성 낮음, 성장기=수요 급증·대량생산·설비 고정화, 성숙기=표준화·경쟁기업 증가·사업기회 축소, 쇠퇴기=비교우위 후진국 이전·생산기지 이전 순서로 단계별 키워드를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1. 국제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 프랜차이징은 해외사업에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방법 중 가장 위험도가 높다.

② 공여되는 기술 수준이 높아 현지 기업이 흡수할 수 없는 기술이 프랜차이징 대상 기술로 가치가 있다.

③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 원료, 관리시스템까지 가맹점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제도이다.

④ 국제 프랜차이징에서 무형자산 외에 유형자산을 공급하면 해외직접투자가 되므로 금지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 프랜차이징의 정의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프랜차이징은 라이선싱의 한 형태로서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상표·상호 사용권과 함께 표준화된 운영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통제력·위험도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낮은 계약형 진입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국제 프랜차이징=가맹본부가 상표·상호 사용권뿐 아니라 원료 공급, 경영·관리 노하우, 운영 매뉴얼 등 표준화된 사업방식 전체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제도이다. 지분 투자 없이 이루어지므로 해외직접투자보다 통제력과 위험도가 낮은 진입방식으로 분류되며, 공여되는 기술·노하우는 현지에서 그대로 소화·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단순화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다. 또한 원료·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일부 공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해외직접투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정상적인 계약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프랜차이징은 지분 참여 없이 계약을 통해 상표와 운영방식을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통제력이 약하고 위험도도 낮은 진입방식이다. '강력한 통제력'과 '가장 위험도가 높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② X: 프랜차이징 대상 기술은 현지 기업이나 종업원이 그대로 습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단순화된 기술과 노하우여야 가치가 있다. 현지에서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은 오히려 프랜차이징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③ O: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상호 사용권과 함께 원료 공급, 경영관리시스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소 전체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가맹점이 이를 활용해 영업하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④ X: 프랜차이징 과정에서 원료나 설비 등 유형자산이 일부 공급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해외직접투자로 전환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프랜차이징을 해외직접투자와 혼동해 통제력·위험도·유형자산 공급 여부를 반대로 설명한 오답이고, ②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담고 있다. 세 선지 모두 프랜차이징의 본질인 '표준화된 사업방식의 패키지 이전'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프랜차이징을 해외직접투자와 견주어 통제력·위험도·자산 성격을 언급하면,
프랜차이징=계약형·저통제·저위험, 해외직접투자=지분형·고통제·고위험이라는 대비부터 떠올린다. 그다음 '상표·상호+운영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이전'이라는 정의에 들어맞는 선지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국제 프랜차이징=상표·상호 사용권+원료+관리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계약제도, 해외직접투자보다 통제력·위험도 낮음, 대상 기술은 표준화·단순화되어 현지에서 소화 가능해야 가치 있음, 유형자산 일부 공급이 곧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하지는 않음.

NoteBase

문 12. 근대적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국가는 그 국가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하게 된다.

②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있어야만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화된다.

③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의 정리는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④ 두 상품과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국내의 각 생산요소는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정리(FPE),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을 서로 구분해 각 명제의 진술이 어느 이론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헥셔-올린 정리: 한 국가는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이를 수출한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국가 간 생산요소의 직접 이동이 없어도 상품무역만으로 국가 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절대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결론이다(생산요소 이동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무역이 요소이동의 대체 역할을 한다). 스톨퍼-새뮤엘슨 정리: 한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상승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하락한다(가격변화율보다 크게 변하는 확대효과).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실제로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는 실증 결과로, 헥셔-올린 정리의 예측과 반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의 내용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헥셔-올린 정리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그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하게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② X. "국제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있어야만 균등화된다" →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어도 상품무역만으로 균등화된다"로 고쳐야 한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핵심은 상품무역이 생산요소의 국제 이동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③ X. 이 서술은 스톨퍼-새뮤엘슨 정리가 아니라 레온티에프 역설의 내용이다.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헥셔-올린 정리의 예측과 실제 무역 자료가 어긋난다는 실증적 역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④ X.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의 결론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 생산에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집약적으로 이용된 요소 가격 하락, 다른 요소 가격 상승)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오답 포인트

②는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를 정반대로 이해한 오답이다: 이 정리의 존재 의의 자체가 '요소이동 없이도 상품무역만으로 균등화가 가능하다'는 데 있는데, 지문은 요소이동을 필수조건처럼 서술해 틀렸다. ③은 이론 이름표를 바꿔치기한 오답으로, 내용 자체(미국의 무역구조 역설)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레온티에프 역설이지 스톨퍼-새뮤엘슨 정리가 아니다. ④는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의 인과관계를 뒤집은 오답으로, 집약적으로 사용된 요소의 가격 방향과 다른 요소의 가격 방향을 서로 바꿔 서술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이론 관련 지문에서는 먼저 어떤 정리의 이름이 언급되는지 확인한 뒤, 그 정리 고유의 결론(누가 무엇을 수출하는가/요소이동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가격이 오르는가 내리는가)과 지문의 서술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특히 레온티에프 역설과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처럼 이름과 내용이 뒤바뀐 함정,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처럼 '이동이 필요하다/불필요하다'가 뒤집힌 함정, 인과관계의 방향(가격 상승/하락)이 뒤집힌 함정을 우선적으로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헥셔-올린 정리=풍부한 요소 집약적 상품 수출.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요소이동 없이도 상품무역만으로 균등화(레온티에프 역설과 별개). 스톨퍼-새뮤엘슨 정리=상품가격 상승 → 그 상품에 집약적으로 쓰인 요소가격 상승, 다른 요소가격 하락. 레온티에프 역설=자본풍부국 미국이 실제로는 노동집약재 수출·자본집약재 수입(H-O 예측과 반대).

NoteBase

문 13. 국제 합작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판매와 공급망의 획득이 가능하다.

②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 등이 합작파트너에게 유출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낮다.

③ 초기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분산효과가 있다.

④ 외국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배제함으로써 수용국 국민감정을 순화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 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가 지분단독투자(단독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갖는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합작투자가 기술 유출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개념

국제 합작투자는 현지 파트너와 지분·경영을 공유하는 진입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공급망·시장 지식을 활용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둘째, 단독으로 진출할 때보다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성을 파트너와 나누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셋째, 현지 자본이 참여하므로 외국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옅어져 수용국의 배타적 국민감정(경제적 민족주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합작파트너와 경영·기술·노하우를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독점적 기술이나 핵심 노하우가 파트너를 통해 유출되거나 이전될 위험은 단독투자보다 오히려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용국 기업과 합작함으로써 그 기업이 이미 구축해 둔 유통망과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이를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판매·조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유출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낮다" → "유출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와 기술·경영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독점적 기술이 파트너에게 노출·이전될 위험이 단독투자보다 크다는 것이 합작투자의 대표적 단점이다.
③ O: 합작투자는 초기 투자금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수요 예측 실패, 정치·경제적 리스크 등)을 파트너와 분담하므로 위험 분산효과가 있다.
④ O: 현지 자본이 지분에 참여하므로 순수 외국자본 단독기업이라는 인상이 옅어지고, 이에 따라 수용국의 배타적 국민감정이나 규제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④를 합작투자의 장점으로 먼저 확인하고 나면 소거법으로도 ②가 남는다. 함정은 ②의 문장 구조가 "가능성이 낮다"로 되어 있어 언뜻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점인데, 실제로는 합작투자의 본질적 단점(기술·노하우 공유에 따른 유출 위험 증가)을 정반대로 뒤집어 서술한 문장이다. "유출 가능성"이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붙은 "낮다/높다"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시장 진입방식(수출, 라이선싱, 합작투자, 단독투자, M&A 등) 비교 문제에서는 항상 "통제력", "위험 분산", "기술 유출 위험", "현지화 정도"라는 네 가지 축으로 각 방식을 정리해 두고, 선지가 이 축 중 하나를 반대로 뒤집어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암기 포인트

합작투자 = 비용 절감·위험 분산·국민감정 완화는 장점,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 증가와 경영권 갈등 가능성은 단점이라는 대비 구도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4. WTO의 주요 원칙과 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관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②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수입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품과 동종의 국내생산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③ 양허 관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어느 상품에 대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다.

④ 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란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WTO 체제를 지탱하는 두 핵심 무차별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그리고 관세협상의 결과물인 양허 관세율, 수입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이원화하는 관세할당 제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관세할당 제도는 '쿼터 안'과 '쿼터 밖' 중 어느 쪽에 낮은 관세를, 어느 쪽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지가 뒤바뀌기 쉬운 부분이라 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최혜국 대우(MFN) 원칙은 한 회원국에 부여한 유리한 관세·통상 조건을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낮춰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② O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은 국경을 통과해 수입된 이후의 상품에 대해서는 동종의 국내생산품과 세제·규제 등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수입 이후 단계에서의 무차별 대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정확하다.

③ O - 양허 관세율은 WTO 회원국이 다자간 관세협상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해 그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상한 관세율을 뜻한다. 회원국은 실행 관세율을 양허 관세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설명은 정확하다.

④ X - 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는 일정 수입량(쿼터)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을 우대하고, 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선지는 쿼터 내에 높은 관세율을, 쿼터 밖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여 적용 관계가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관세할당 제도를 저율관세할당(TRQ)의 취지, 즉 '일정 물량까지는 저관세로 수입을 열어주고 그 이상 물량에는 고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반대로 암기하면 ④번처럼 쿼터 내부에 고관세, 쿼터 외부에 저관세를 매긴다고 잘못 기억하기 쉽다. 또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혼동해 '수입 이후 동등 대우'를 최혜국 대우로, '회원국 간 동등 대우'를 내국민 대우로 뒤바꿔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할당 관련 선지가 나오면 먼저 '쿼터 내부=저관세, 쿼터 외부=고관세'라는 기본 구조를 떠올리고 선지의 고저 관계가 이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가 함께 제시되면 최혜국 대우는 '회원국 간' 비교,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간' 비교라는 비교 대상의 차이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최혜국 대우: 회원국 간 무차별(한 나라에 준 혜택은 모든 회원국에). 내국민 대우: 수입 후 국내생산품과 무차별. 양허 관세율: 이 이상 올리지 않기로 약속한 상한선. 관세할당: 쿼터 내부=저관세, 쿼터 외부=고관세.

NoteBase

문 15.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은 국제거래를 행하는 기업이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 흐름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위험을 감소시키는 관리기법을 말한다.(나)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거래적 환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두 글로벌 기업이 각기 상대회사의 자회사에게 자국통화로 동시에 대출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차입된 통화로 상환하는 계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가):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나): 패러럴 론(parallel loan)
② (가):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나): 패러럴 론(parallel loan)
③ (가):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나): 디스카운팅(discounting)
④ (가):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나): 디스카운팅(discount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환위험 관리기법 중 결제시기 조정형 기법(리딩과 래깅)과 결제금액 상계형 기법(맷칭과 네팅)을 구분하고, 다국적기업의 대표적 역외 자금조달·환위험 헤지 수단인 패러럴 론의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은 환율변동을 예상하여 외화자금의 결제시기 자체를 앞당기거나(리딩) 늦추는(래깅) 방법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은 결제시기가 아니라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 금액을 서로 대응·상계시켜 순노출액만 결제하는 기법으로, 시기 조정이 아닌 금액 상계가 핵심이다.
패러럴 론(parallel loan)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두 모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자회사에게 각자 자국통화로 동시에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기간 후 각자 빌려준 통화 그대로 상환받는 계약으로, 실제 외환거래 없이 거래적 환위험을 회피하면서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디스카운팅(discounting)은 수출환어음 등 외화표시 채권을 만기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기법으로 자금조달·유동성 확보 성격이 강하고, 지문의 상호대출 구조와는 무관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 패러럴 론(parallel loan) → (가)는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이라는 지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고, (나)는 두 기업이 상대 자회사에 자국통화로 동시 대출 후 차입 통화로 상환한다는 지문 설명이 패러럴 론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옳다.
②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 패러럴 론(parallel loan) → (나)는 옳으나 (가)가 틀렸다. 맷칭과 네팅은 결제시기 조정이 아니라 자금 유출입액의 상계가 핵심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다르다.
③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 디스카운팅(discounting) → (가)는 옳으나 (나)가 틀렸다. 디스카운팅은 외화채권의 만기 전 할인 현금화 기법으로, 두 기업 간 상호 자국통화 대출·상환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맷칭과 네팅(matching and netting) / 디스카운팅(discounting) → (가), (나) 모두 틀렸다. 위 ②, ③에서 설명한 이유가 각각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리딩과 래깅은 '언제 결제하느냐'의 문제이고, 맷칭과 네팅은 '얼마를 상계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혼동하면 (가)를 잘못 고르게 된다. 또한 패러럴 론과 디스카운팅은 둘 다 외화자금과 관련된 거래이지만, 패러럴 론은 두 기업 간 상호대출·상환 구조이고 디스카운팅은 단순히 채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지문의 '동시 대출-차입통화 상환' 구조가 나오면 반드시 패러럴 론으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결제시기를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리딩과 래깅, '금액을 상계·차감'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맷칭과 네팅으로 구분한다. 지문에 '두 기업이 서로 상대방 자회사에 자국통화로 동시 대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구조가 나오면 패러럴 론, '외화채권을 만기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구조가 나오면 디스카운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딩과 래깅=시기 조정, 맷칭과 네팅=금액 상계, 패러럴 론=상호 동시대출·자국통화 상환, 디스카운팅=채권 할인 현금화로 각각 짝지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매에 의한 매매
ㄴ. 고가의 예술품 매매
ㄷ. 전기의 매매
ㄹ. 선박 엔진의 매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쟁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2조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를 열거하고 있다. 이 문항은 보기 ㄱ~ㄹ 중에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을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쟁점이다. 배제 사유(제2조)와 물품의 성질에 따른 배제(제2조 마지막 두 호)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용어 풀이

CISG(국제물품매매협약):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통일 국제협약이다.
적용 배제: 협약 제2조가 매매의 목적·방식·물품의 종류를 이유로 협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말한다.

핵심 구분

CISG 제2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매매는 크게 두 축이다. 첫째, 매매의 '방식·목적'에 따른 배제로 개인·가족·가정용 소비자 매매,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가 있다. 둘째, '물품의 종류'에 따른 배제로 주식·지분·투자증권·유통증권·통화의 매매, 선박·소선(小船)·부선(浮船)·항공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가 있다. 반면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이나 예술품이라는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며, 선박 자체가 아닌 '선박 엔진'은 부품이므로 배제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 X: ㄱ(경매)은 배제 대상이 맞지만 ㄴ(고가의 예술품)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예술품도 유체동산인 물품이며 고가라는 사정만으로 협약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 ㄱ, ㄷ → O: ㄱ(경매에 의한 매매)과 ㄷ(전기의 매매)은 모두 CISG 제2조가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거래다. 따라서 두 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ㄴ, ㄹ → X: ㄴ(고가의 예술품)은 배제 대상이 아니고, ㄹ(선박 엔진)도 배제 대상이 아니다. 배제되는 것은 '선박' 자체이며 선박에 장착되는 엔진은 별개의 물품(부품)이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④ ㄷ, ㄹ → X: ㄷ(전기)은 배제 대상이 맞지만 ㄹ(선박 엔진)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선박 엔진의 매매에는 CISG가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선박·항공기의 매매'가 배제된다는 것을 '선박 관련 물품 전부'로 확대 해석해 ㄹ(선박 엔진)을 배제 대상으로 잘못 고르는 것이 이 문항의 대표적 함정이다. 배제되는 것은 선박·항공기 그 자체이고, 엔진·부품·기자재는 일반 물품으로 CISG가 적용된다. 또한 '고가의 예술품'을 특수한 물품으로 보아 배제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가격의 높고 낮음이나 예술품 여부는 협약의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적용 배제(제2조)는 '소비자용·경매·강제집행 / 증권·통화 / 선박·항공기 / 전기' 네 묶음으로 외워 두고, 보기의 거래가 이 열거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만 대조한다. 특히 '선박'과 '선박 부품(엔진 등)'을 구분하고, 물품의 가격·예술성 같은 부수적 성질은 배제 사유가 아님을 곧바로 떠올린다.

암기 포인트

CISG 적용 배제 매매(제2조): 개인·가족·가정용(소비자) 매매, 경매, 강제집행·법령에 의한 매매, 주식·증권·유통증권·통화, 선박·소선·부선·항공기, 전기.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선박' 자체이지 '선박 엔진'이 아니며, '고가·예술품'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배제되는 것은 경매(ㄱ)와 전기(ㄷ)뿐이다.

NoteBase

문 17. BCG(Boston Consulting Group)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금 젖소(cash cow)인 시장은 현지에서의 경쟁력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은 시장을 의미한다.

② 별(star)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경쟁우위도 낮고 전략적 중요성도 낮은 시장은 개(dog)라고 하며 이 시장에서는 철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물음표(?)인 시장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쟁우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경쟁력)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금 젖소·별·개·물음표 네 영역으로 나누는 도구이다. 이 문제는 각 영역이 두 축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별(star)=시장 성장률 높음+경쟁력(점유율) 높음 → 계속 투자해 지위를 지킨다. 자금 젖소(cash cow)=시장 성장률 낮음(전략적 중요성 낮음)+경쟁력 높음 → 성장이 둔화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 물음표(question mark)=시장 성장률 높음+경쟁력 낮음 → 적극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개(dog)=시장 성장률 낮음+경쟁력 낮음 → 철수를 검토한다. 즉 자금 젖소는 경쟁력은 높지만 전략적 중요성(성장성)은 오히려 낮은 시장이며,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모두 높은 것은 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금 젖소는 현지 경쟁력(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시장 성장률이 낮아 전략적 중요성은 낮은 시장이다. "전략적 중요성도 높은 시장"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그 설명은 별(star)에 해당한다.
② O — 별은 성장률과 경쟁력이 모두 높은 시장이므로, 계속 투자해 경쟁력(지위)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 개는 경쟁우위(점유율)와 전략적 중요성(성장률)이 모두 낮은 시장이며, 수익성이 낮아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 물음표는 성장률은 높지만 경쟁력이 낮은 시장이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쟁우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자금 젖소와 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영역 모두 경쟁력(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전략적 중요성)에서 자금 젖소는 낮고 별은 높다는 차이를 놓치면 ①을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CG 매트릭스 문제는 먼저 두 축(시장 성장률, 상대적 경쟁력/점유율)에서 각 영역이 높은지 낮은지를 표로 정리한 뒤 선지와 대조한다.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모두 높다"는 설명이 자금 젖소에 붙어 있으면 오류이며, 이는 별에 대한 설명임을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별=고성장·고점유율(투자 유지), 자금 젖소=저성장·고점유율(수확), 물음표=고성장·저점유율(선별 투자), 개=저성장·저점유율(철수 검토).

NoteBase

문 18. 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영미법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는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③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진술을 하지 않는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 시에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역계약(청약과 승낙)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영미법(대화주의·발신주의·도달주의)의 태도와, 승낙의 요건(부분적 승낙·침묵·승낙 방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격지자 간 통신수단(우편·전보 등)과 대화자 간(전화·텔렉스 등) 통신수단에서 영미법이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발신주의(dispatch rule, mailbox rule)=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 우편·전보처럼 격지자 간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에 적용된다. 도달주의(receipt rule)=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 전화·텔렉스 등 대화자 간 즉시 통신수단에 적용된다. 영미법은 이 둘을 통신수단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며, 우리 민법이나 CISG(비엔나협약)처럼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로 일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미법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청약의 조건 가운데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은 청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counter-offer)에 해당하고, 원래의 청약은 소멸하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영미법은 대화자 간(전화·텔렉스 등 즉시 통신수단)에는 도달주의를, 격지자 간(우편·전보 등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에는 발신주의(mailbox rule)를 적용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며, 격지자 간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선지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③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아무런 적극적 행위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낙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청약자가 승낙 방법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청약자가 신속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청약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낙하면 그 승낙은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미법의 발신주의(mailbox rule)를 도달주의와 혼동하기 쉬운데, 통신수단이 격지자 간(우편 등 시차 있음)인지 대화자 간(전화 등 즉시 소통)인지에 따라 적용 원칙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또한 부분적 승낙과 조건부 승낙은 반대청약으로 취급되어 원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신주의·도달주의를 묻는 선지가 나오면 먼저 어떤 통신수단(격지자 간/우편형 vs 대화자 간/즉시형)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한다. 영미법이 '모두 도달주의' 또는 '모두 발신주의'라고 일원화해서 설명하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격지자 간에는 발신주의,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라고 구분해서 설명하면 옳은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영미법 승낙 효력발생: 격지자 간(우편·전보)=발신주의(mailbox rule), 대화자 간(전화·텔렉스)=도달주의. 부분적·조건부 승낙=반대청약(계약 불성립). 침묵=원칙적으로 승낙 아님. 승낙 방법 미지정 시 신속한 수단 또는 청약과 동일한 방법 사용=유효.

NoteBase

문 19. 수출과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은 해당 생산품의 생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다른 생산물 생산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② 수출산업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는 증가하게 된다.

③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④ 수입품과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출과 수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관세수입효과, 수입경쟁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수출의 소득유발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핵심 개념

수출의 생산유발효과=수출이 해당 재화 생산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도 함께 늘리는 효과이다. 수출의 소득유발효과=수출로 벌어들인 금액 중 국내에서 부가가치(임금·이윤 등 국내 요소소득)로 남는 부분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이며, 그 크기는 수출액에서 수입 원자재·중간재 비중(수입의존도, 수입유발계수)을 뺀 국내 부가가치 비율에 좌우된다.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대금이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수입유발액)이 커지므로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 즉 소득유발효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관세수입효과=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세수만큼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수입경쟁효과=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이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에 나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출은 해당 생산품 자체의 생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부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 등 전후방으로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도 함께 촉진한다. 이는 수출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② X. 수출산업이 사용하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중 원자재 수입대금으로 해외에 다시 지불되는 부분이 커져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국내 소득)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이 선지가 틀린 표현이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다.
③ O.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수입의 하나로서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수입품과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수입경쟁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입의존도와 소득유발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수입의존도(수입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사 오는 원자재 비중이 높다는 뜻이므로, 수출로 번 돈의 많은 부분이 다시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에 남는 소득은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나머지 선지들은 각각 생산유발효과, 관세수입효과, 수입경쟁효과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옳게 설명하고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출·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각 선지가
생산유발효과·소득유발효과·관세수입효과·수입경쟁효과 중 어느 개념을 말하는지 분류한 뒤, 소득유발효과가 언급되면 반드시 수입의존도(국내 부가가치 비중)와의 관계를 방향까지 정확히 따져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입의존도 ↑ → 국내 부가가치 비중 ↓ → 소득유발효과 ↓ (수입의존도와 소득유발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로 정리해 기억한다.

NoteBase

문 20.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노동의 투입량으로 설명하였는데, 생산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② 양국이 무역을 전제로 완전 특화 생산을 한다고 본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③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 있다.

④ 무역을 통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무역 당사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이 갖는 이론적 한계(전제의 비현실성,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비교우위이론의 핵심 결론(절대우위와 무관하게 무역이 발생한다는 점)을 한계로 잘못 뒤바꾼 오답을 가려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해 각 재화의 생산비를 노동 투입량으로 나타내고,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또는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상대적 생산비, 즉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 이론이다. 이 이론이 실제로 지적받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고 모든 노동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한 점(현실에서는 숙련도 차이가 존재). 둘째, 완전특화를 전제로 한 점(현실에서는 대부분 불완전특화가 나타남). 셋째, 무역으로 발생한 이득이 각국 내 생산요소·경제주체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다. 반면 두 재화 모두에서 생산비 우위가 있는 나라와의 무역 발생 여부는 비교우위이론이 이미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지,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아니다. 즉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특화하면 여전히 무역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 비교우위이론의 결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옳다. 리카도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생산비를 노동 투입량만으로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자마다 숙련도·생산성이 달라 노동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② 옳다. 리카도 이론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완전특화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성 제약, 규모의 수확체감 등으로 완전특화가 아닌 불완전특화가 일반적이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③ 옳지 않다(정답). 이 진술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절대우위)가 있으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리카도 이론이 보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비교우위이론의 핵심 결론과 정반대이다. 리카도 이론의 요지는 절대우위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더 낮은(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특화하면 두 재화 모두 우위인 나라와 두 재화 모두 열위인 나라 사이에서도 무역과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론적 결함이 아니라 이론의 설명 대상이며, 지문의 서술 자체가 틀렸다.
④ 옳다. 리카도 이론은 무역을 통해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지만, 그 이득이 각국 내 노동자·자본가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모두 교과서에서 실제로 언급되는 리카도 이론의 한계(노동 동질성 가정, 완전특화 가정, 분배 문제 미설명)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소거해야 한다. ③은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라는 표현 때문에 얼핏 한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우위이론이 정확히 설명해내는 부분(절대우위와 무관하게 무역이 성립)을 거꾸로 서술한 오답이므로, 선지 내용이 이론의 핵심 결론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우위이론의 '한계' 유형 문제는 선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실제로 이 이론이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이론이 잘 설명하는 핵심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쓴 것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인 경우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나오면 곧바로 비교우위이론의 결론(절대우위와 무관하게 무역 발생)과 충돌하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 비교우위이론의 실제 한계 3가지: 노동가치설(노동 동질성 가정)의 비현실성, 완전특화 가정의 비현실성, 무역이득의 국내 분배 문제 미설명. 절대우위와 관계없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비교우위이론의 핵심 결론이다.

NoteBase

문 21. 탄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덤핑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② 상계관세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③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④ 편익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정답 2번

쟁점

관세법상 탄력관세 각 유형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놓고, 명칭과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고르는 문제이다. 각 선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관세 정의를 가져오되 이름만 다른 관세로 바꿔치기했으므로, 정의 내용을 어느 관세가 맞는지 되짚어야 한다.

용어 풀이

탄력관세=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본세율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행정부가 조정하는 관세를 통칭한다.
반덤핑관세=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차액(덤핑차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보조금액 이하를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할 때 세율을 조정하는 관세이다.
보복관세=상대국이 우리 권익을 침해할 때 그 나라 수입물품에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긴급관세=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성 관세이다.
편익관세=조약상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기존 조약 혜택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관세이다.
할당관세=물자수급·산업경쟁력 등을 위해 일정 수량 기준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관세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명칭과 정의의 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옳은 것 하나만 정확한 짝이고 나머지 셋은 정의가 다른 관세의 것으로 바뀌어 있다.
① 정의는 조정관세(세율 불균형 시정, 기본세율에 100분의 100 한도)의 것이다.
② 정의와 명칭이 모두 상계관세로 일치한다.
③ 정의는 보복관세(권익 침해 시 피해상당액 부과)의 것이다.
④ 정의는 할당관세(수입 촉진 위해 세율 인하)의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된 정의(산업구조 변동으로 세율 불균형이 심해 이를 시정,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범위)는 조정관세의 정의이다.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덤핑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명칭 오류 → '반덤핑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정의이다.
② O: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 외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조사·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수출자·수출국 지정,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 추가 부과라는 요소가 모두 상계관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제시된 정의(교역상대국이 우리 권익을 부인·제한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될 때 그 나라 수입물품에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는 보복관세의 정의이다. 긴급관세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성 관세이다. 명칭 오류 → '긴급관세'가 아니라 '보복관세'의 정의이다.
④ X: 제시된 정의(물자수급 원활·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수입 촉진이 필요할 때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빼고 부과)는 할당관세(세율 인하분)의 정의이다. 편익관세는 관세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기존 조약 혜택 범위에서 관세상 편의를 제공하는 관세이다. 명칭 오류 → '편익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의 정의이다.

오답 포인트

정의 자체는 모두 실제 관세법에 존재하는 문장이라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100분의 100' '세율 불균형 시정'이 나오면 조정관세, '보조금·장려금'이 나오면 상계관세, '권익 침해·피해상당액'이 나오면 보복관세, '수입 촉진·100분의 40 인하'가 나오면 할당관세라는 키워드로 명칭을 대조해야 한다. 이름만 보고 넘기면 ①③④의 바꿔치기를 놓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탄력관세 명칭·정의 짝 맞추기 문제는 정의 속 핵심 키워드로 어느 관세인지 먼저 확정한 뒤 앞의 명칭과 비교한다. '덤핑차액=반덤핑', '보조금=상계', '수입급증·심각한 피해=긴급(세이프가드)', '권익 침해=보복', '조약 미혜택국 편의=편익', '수량 기준 세율 조정=할당', '세율 불균형 시정=조정'을 한 세트로 외워 두면 바꿔치기 선지를 즉시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계관세=보조금·장려금 받은 수입품에 보조금액 이하 추가 부과(주무부장관 요청, 기재부령으로 물품·수출자·수출국 지정)로 기억한다. 이번 문제의 오답 짝은 반덤핑↔조정, 긴급↔보복, 편익↔할당으로 정의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2. 무역 통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외화가득률은 한 나라가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외화를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③ 수입자유화율은 한 국가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해당 국가의 총수입품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④ 교역조건 지수는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무역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지표들(무역의존도, 외화가득률, 수입자유화율, 교역조건지수)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지표가 무엇을 분자·분모로 삼아 계산되는지, 무엇을 측정하려는 지표인지를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무역의존도는 국민경제(주로 국민소득)에서 무역(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화가득률은 수출로 실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출액 중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입원자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에 남는 외화 획득분을 측정한다. 수입자유화율은 전체 수입품목 중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교역조건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 사이의 가격 비율, 즉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가 일정한 수출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무관하다.

선지별 해설

①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설명은 옳다.
② 외화가득률은 수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설명은 옳다.
③ 수입자유화율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입 가능한 상품 수가 총수입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설명은 옳다.
④ 교역조건지수를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설명한 것은 틀린 표현이다. → 교역조건지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상대적 비율(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교역 조건이 유리해졌는지 불리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역특화지수나 시장점유율 등 별도의 지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교역조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연히 '세계무역에서의 비중'과 연결짓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역조건지수는 가격 비율 개념이지 무역 규모나 비중 개념이 아니다. 지표명에 이끌려 뜻을 짐작하지 말고, 각 지표가 실제로 무엇을 분자·분모로 계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 통계 용어 문제는 지표명과 정의를 1대1로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율/정도를 나타낸다'는 서술이 나오면 그 비율이 실제로 무엇을 분자와 분모로 하는지 되짚어 확인한다. 특히 교역조건지수처럼 이름만으로 뜻을 추측하기 쉬운 용어는 반드시 정의(가격지수의 비율)를 떠올려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무역의존도=국민경제 대비 무역 비중, 외화가득률=수출로 실질적으로 남는 외화 비율, 수입자유화율=자유수입 가능 품목의 비중, 교역조건지수=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세계무역 비중과는 무관)로 각각 짝지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23.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유형을 수출, 국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의 선택과정을 설명한 것은?

① 러그만(A. M. Rugman)의 모형
② 하이머(S. H. Hymer)의 모형
③ 홉스테드(G. Hofstede)의 모형
④ 본드(M. Bond)의 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제화 전략을 수출, 국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기업이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가와 모형을 짝짓는 문제이다. 국제경영학에서 이 세 가지 진입 방식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은 내부화 이론이며, 이를 대표하는 학자가 러그만이다.

핵심 정리

러그만(A. M. Rugman)의 내부화 이론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 등 무형자산을 외부 시장(라이센싱, 수출 등)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시장 실패 위험을 비교하여, 그 비용이 낮으면 수출이나 라이센싱을, 외부시장 거래비용이 크고 통제의 필요성이 높으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 내부로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한다. 즉 수출·라이센싱·해외직접투자라는 세 진입방식 사이의 선택과정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설명하는 모형이다. 하이머(S. H. Hymer)는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기업의 독점적 우위(시장 불완전성)로 설명한 학자로, 세 가지 진입방식 사이의 선택과정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홉스테드(G. Hofstede)와 본드(M. Bond)는 각각 국가 간 문화 차이를 측정하는 문화 차원 이론과 유교적 역동성(중국인 가치관 조사) 연구로 알려진 학자로, 국제화 진입방식 선택과는 관련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러그만(A. M. Rugman)의 모형: O, 내부화 이론을 통해 수출, 국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설명한 모형이다.
② 하이머(S. H. Hymer)의 모형: X, 해외직접투자가 왜 일어나는지를 기업의 독점적 우위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세 진입방식 간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니다.
③ 홉스테드(G. Hofstede)의 모형: X, 국가 간 문화 차이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등 문화 차원으로 분류한 이론으로 진입방식 선택과 무관하다.
④ 본드(M. Bond)의 모형: X, 유교적 역동성 등 동양 문화권 가치관을 연구한 학자로 진입방식 선택과 무관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하이머의 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러그만의 이론은 '수출·라이센싱·해외직접투자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차이를 혼동하기 쉽다. 또한 홉스테드와 본드는 국제경영의 문화 연구 학자로, 진입방식 선택 이론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므로 이름만 보고 국제경영 관련 학자라 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수출, 국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선택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부화 이론과 러그만을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독점적 우위)'가 나오면 하이머를 떠올리고, '문화 차이·국가 간 가치관 비교'가 나오면 홉스테드나 본드를 떠올려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러그만=내부화 이론=진입방식(수출·라이센싱·해외직접투자) 선택과정, 하이머=독점적 우위=해외직접투자 발생 이유, 홉스테드·본드=문화 차원 이론로 서로 다른 영역의 학자임을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4.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생산입지 이론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해외직접투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잠재적 내지 현시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투자국에서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피투자국에서는 비교우위에 놓인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있는 주요 변수들 및 경영의사결정 모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OLI 패러다임)이 어떤 개별 이론들을 결합해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이론의 핵심 구성요소와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절충이론과 별개의 다른 해외직접투자 이론(거시적 비교생산비 접근)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절충이론(eclectic theory, OLI 패러다임)은 하이머 등의 독점적 우위론(Ownership advantage), 버클리·카슨 등의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advantage), 그리고 생산입지 이론(Location advantage)을 하나로 결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업은 소유특유우위(O)를 가지고, 이를 외부시장을 통하지 않고 내부화(I)하는 것이 유리하며, 동시에 특정 입지(L)가 생산에 유리할 때 비로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때 기업특유의 소유우위는 일정 기간 그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브랜드·경영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거시적 비교생산비(비교우위·비교열위) 구조에서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을 설명하는 접근은 고지마(Kojima) 등이 제시한 거시경제적(비교우위) 접근으로, 절충이론과는 별개의 이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절충이론은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생산입지 이론을 추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은 OLI 패러다임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 해외직접투자를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잠재적·현시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투자국이 비교열위에 있고 피투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절충이론이 아니라 거시적 비교생산비(비교우위) 접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절충이론은 소유·내부화·입지의 세 가지 우위요소 결합을 핵심으로 하므로 이 설명은 절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③ O -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소유특유우위)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절충이론의 O(ownership) 요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④ O - 절충이론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과 경영의사결정모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은 절충이론의 학문적 의의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절충이론(OLI)과 거시적 비교생산비 접근을 같은 이론의 다른 표현으로 착각하면 ②를 옳은 설명으로 오인하게 된다. 절충이론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소유·내부화·입지 우위 결합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미시적·기업 중심 이론이고, 비교생산비를 근거로 산업별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계열(거시경제적 비교우위 접근)의 논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비교생산비', '비교우위·비교열위', '거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절충이론(OLI)이 아니라 별개의 거시경제적 접근 이론을 설명하는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절충이론 관련 문제에서는 O(소유)·I(내부화)·L(입지) 세 요소가 실제로 언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충이론 = OLI = 소유특유우위(O) + 내부화우위(I) + 입지특유우위(L)의 결합이며, 비교생산비·비교우위에 기초한 거시적 설명은 절충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5.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청된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③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4번

쟁점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의 요건과 양도 방법에 관한 UCP 600 제38조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1회 양도 제한'의 진짜 의미와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양도가능 신용장: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된 신용장으로, 제1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 원신용장의 수익자로, 실제 물품 공급자(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중개무역상 등이다.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 제1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는 실제 공급자이다.
부보비율(insurance coverage): 원신용장이 요구한 부보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부보 비율이다.

핵심 구분

1회 양도 제한의 의미: 양도는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은 '재양도 금지'(제2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를 뜻하며, 제1수익자가 여러 제2수익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
분할 양도: 분할선적(분할청구)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는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1회 양도'로 본다(UCP 600 제38조 d항).
양도 시 변경 가능 항목: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해야 하나, 신용장 금액·단가는 감액, 유효기일·선적기간·서류제시기간은 단축, 부보비율은 증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38조 g항).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UCP 600 제38조 b항). transferable이라고 기재되지 않은 신용장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양도된 신용장은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장 금액·단가의 감액, 유효기일·선적기간·서류제시기간의 단축, 그리고 부보비율의 증가는 예외로 변경할 수 있다(제38조 g항). 부보비율을 높여 원신용장이 요구한 부보금액을 맞추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제1수익자는 원신용장의 발행의뢰인(applicant)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대체하여 양도할 수 있다(제38조 h항). 중개무역에서 실공급자에게 발행의뢰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활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분할선적(분할청구)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는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제38조 d항). 양도가 1회에 한한다는 것은 제2수익자가 다시 양도하는 재양도를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 여러 제2수익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양도는 1회에 한한다'는 문구만 보고 ④를 옳은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1회 제한'은 재양도(제2수익자→제3자) 금지를 뜻하는 것이지, 제1수익자가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분할선적이 허용되면 다수 제2수익자로의 분할 양도가 명문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도가능 신용장 문항에서 '다수의 제2수익자', '분할 양도', '1회 한정'이 함께 나오면 분할선적 허용을 전제로 다수 양도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진다. 분할선적이 허용되면 다수 제2수익자 분할 양도는 가능(정답 여부는 발문 방향에 따라 결정)하고, 금지되는 것은 제2수익자의 재양도뿐이라는 원칙으로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양도가능 신용장(UCP 600 제38조): transferable 명시 필요 / 양도는 1회(재양도 금지)이나 분할선적 허용 시 다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 / 변경 가능 항목은 금액·단가 감액, 기간 단축, 부보비율 증가 /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 명의를 자기 명의로 대체 가능.

NoteBase